

서는 자리가 바뀌자 보인 것들 : 15년의 취재수첩과 3년의 중재노트 사이에서

정혜진 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이런저런 위원회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필자에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경기중재부 중재위원으로 활동한 기회가 다른 어떤 위원회 활동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다. 중재위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가지는 무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전 현직 기자로 15년을 일했기 때문이다.

기자 시절, 언중위는 그리 달가운 곳이 아니었다. 지면에 실린 기사의 내용에 대해 독자가 항의를 해오면 그 자체만으로 피곤한 일인데, 신문사 선에서 해결되지 않고 독자가 언중위에 중재 혹은 조정 신청을 하면 우리는 “(언중위에) 끌려간다”거나 “별을 달았다”는 식으로 자조 섞인 말로 표현하곤 했다. 재미있는 건, 정보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이 내려지면 마치 기사를 잘못 쓴 것 같은 패배감에 속상해하면서도 언중위에 자주 ‘끌려가는’ 기자들이 유능한 기자라는 묘한 인식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사를 쓴다는 방증으로 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쉽게도(?) 필자는 기자 시절 한 번도 위원회에 ‘끌려간’ 적이 없다. 매번 정정이나 반론이 필요 없는 완벽한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싶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주로 기획기사 부서에서 일해 마감 시간 직전까지 분초를 다투며 작성해야 하는 그런 기사를 쓸 기회가

별로 없었기도 하고, 운이 좋아 매번 좋은 데스크들을 만나 문제 될만한 부분은 미리 보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신 동기들이 언중위에 다녀온 날이면 함께 술을 마시며 중재위원들과 신청인을 성토(?)하곤 했다. 그렇게 특별한 '전과' 없이 기자 생활을 마감한 내가 신문을 떠났고 12년 만에 변호사 자격으로 중재위원에 위촉되었을 때 감회는 남달랐다.

중재위원이 되어 가장 먼저 깨달은 점은 '서는 자리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기자 시절에는 동료가 조정에 회부되면 '신청인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며 지레 피신청인의 입장에 서곤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노고를 왜 몰라주나 싶은 서운함도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중재위원의 눈으로 마주한 신청인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았다. 아직 었된 고등학생이 신청인으로 출석했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다.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기사는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갖춘 보도였다. 다만 공익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 설정이 미흡했다. 취재의 충실함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었지만, 기자가 사용한 몇몇 표현으로 인해 기사에서 익명으로 지칭한 고등학생 선수가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된 게 문제였다. 기자가 의도한 것은 운동부 코치의 비리 폭로였는데, 코치의 비리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된 운동부 학생의 신원이 드러난 것이다. 기자의 시각으로만 보면 그건 기자가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아마(기사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부차적인 정보였다. 제한된 시간 내에 취재하고 마감해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의 실명을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온 고등학생은 조정 과정에서 위촉되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다가 중재위원들이 기자의 부주의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자 그제야 보도로 인한 피해를 직접 진술하며 눈물을 보였다. 자신은 계속 운동을 해야 하고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이라는 건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보도로 인해 신원이 알려져 운동부도 잠시 쉬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오래 기억에 남은 건 어린 학생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사'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면 미처 의도치 않았던 피해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기자가 충실하게 취재한 사건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법익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자에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그때 충분히 알지 못했다.

앞선 고교 운동부 사건은 중재위원 3년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실로 '아름답게' 해결된 사례였다. 조정 과정에서 우리 중재부는 피신청인 측에, 비록 실명을 쓰지는 않았으나 주변 정보들을 조합하면 해당 학생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런 위협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을 지적했다. 다행히 피신청인 측도 열린 마음으로 조정에 임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연과 중재부의 지적을 경청한 뒤,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욕이 앞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담았던 것 같다”며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줄 몰랐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양측이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임한 덕분에 합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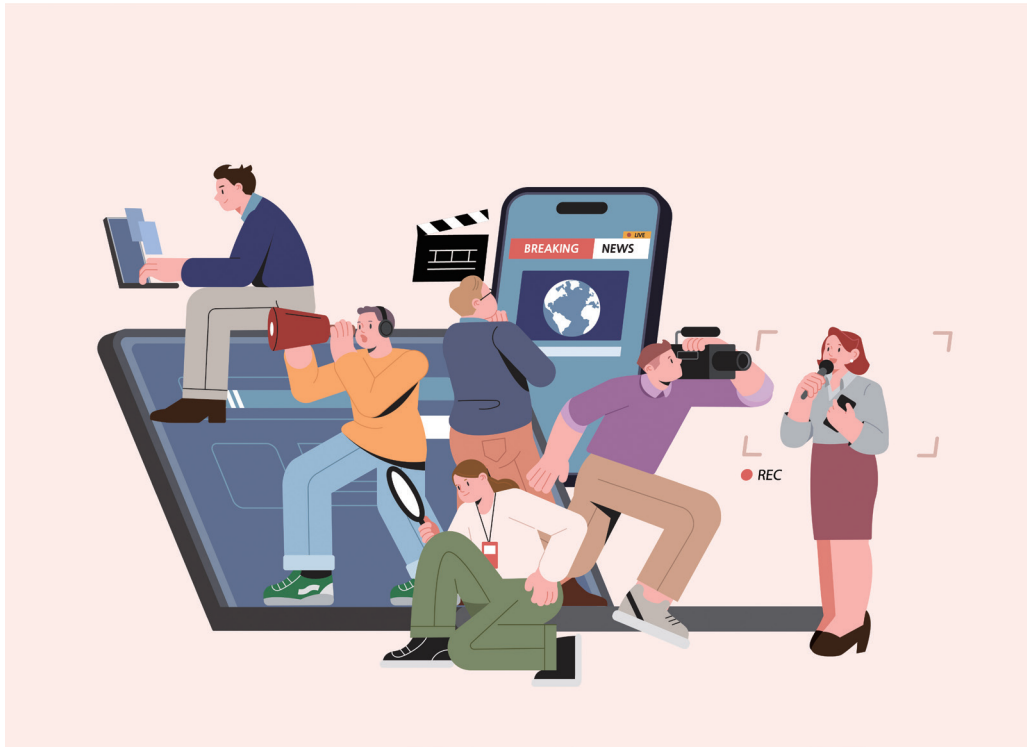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은 늘 이처럼 훈훈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보도의 수준이 너무 낮아 중재부가 한숨을 내쉬게 되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1인 인터넷 매체나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보도는 저널리즘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비문은 예사였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카더라’ 식의 폭로가 넘쳐났다.

필자가 신문사를 떠나던 2000년대 말만 해도 언론은 여전히 ‘게이트키퍼’가 살아있는 조직이었다. 현장을 누비던 기자들의 원고는 부장과 국장의 엄격한 데스크킹을 거치며 정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보의 위험은 상당 부분 걸러졌다. 반론 의견 게재 역시 꼭 지켜야만 하는 ‘룰’로 인식되었다. 언론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던 만큼 최소한의 품격은 어느 언론사든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중재위원으로 마주한 환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여전히 언론의 자유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언론사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으나 최소한의 문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게이트키퍼 시스템 자체가 없는 매체들이 차고 넘쳤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제도적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2015년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취재·편집 인력 5명의 상시 고용과 이를 증명할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위 개정 규정에 대해 인터넷신문사 운영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결정).

다수의견은 인터넷신문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거짓·부실 보도를 한 매체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등록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오히려 법적 규율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해당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결정은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가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 현장에서 체감한 현실은 결정문이 전제한 ‘시장에 의한 자정작용’과는 다소 달랐다. 실제로는 자극적 보도와 SNS 확산 구조를 통해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며 존속하는 인터넷 매체도 적지 않았다. 사실 확인, 반론권 보장과 같은 기본적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 피해는 개별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특히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자극적 보도로 조회수를 확보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적지 않게 드러났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임이 분명하다. 다만 그 자유가 실질적 책임 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 등록 요건을 완화한 선택이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을 넓힌 측면이 있다면, 동시에 저널리즘의 최소 기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자율적 논의 또한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중재 위원으로 활동하며 마주한 수많은 사건들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다. 누구나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언론의 문턱은 낮아졌으나 1인 매체 보도의 질적 저하라는 우려는 현실화된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가야 하는데, 과연 현실에서 그 조화가 실현되고 있는지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이런 안타까움은 임기 중 1년간 활동했던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다. 시정권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수

정이 불가능한 지면 매체에는 주의를 촉구하고, 인터넷 매체에는 비식별 처리나 삭제 등의 조치를 안내한다.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여 학습 효과를 유발하거나,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에 미성년 자녀의 사진까지 게재하는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보도의 상당수는 조회 수를 올리고자 하는 인터넷 매체였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들은 시정권고 회의에 오면 가장 최근의 연예계 소식과 엽기적인 범죄 방법을 다 섭렵할 수 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조정신청의 약 70%, 시정권고의 80% 이상이 인터넷신문 기사였다. 조심스럽지만, 헌법재판소의 2016년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이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이라는 '실리'를 놓치게 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다른 중재위원들과 헌신적인 직원들 덕분에 배운 점도 많았다. 언론인 출신 위원님들은 같은 중재부 위원인 동시에 언론계 선배들이었다. 필자와 달리 평생을 언론인으로 보내신 위원님들이 언론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모습과 언론계 선배로서 까마득한 후배뻘인 피신청인 기자들을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달래며 조정에 참여하시는 모습에서 언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법조계 선배이자 법관 위원인 중재부장님으로부터는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 양측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안함으로써 조정 가능성을 높여가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양측의 이해대립이 심해 조정이 안 될 것 같은 사건도 중재부장님의 노련한 진행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면서 감탄하곤 했다. 이러한 기술의 학습은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불어 중재위원들이 사건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별 특성까지 조합하여 매번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소장님과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다.

그 무엇보다 큰 보람은 언중위의 본질적 역할에 있었다. 기자 시절에는 언중위에 '끌려간다'고 표현했지만, 중재위원으로 일하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하고 문명적인 해결 방식에 나 역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다. 조정은 누군가의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자유와 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임기 내내 배웠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과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장치 역시 민주사회의 필수 요소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언중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